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2014.03.03)

자본시장법 제 89 조, 동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4 호 및 제 5 호 등에 따라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 또한 자본시장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 및 동법 시행령 제 223 조에 의거 동 소규모펀드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. 해지일정은 2014.3.30 일에 결산하여, 2014.3.31 일에 해지처리 및 상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- 아 래 –

1. 공시사유 발생일: 2014 년 2 월 28 일

2. 공시사항:

   가: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입니다.

   나.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대상펀드: 아래 펀드 (단위:좌)

펀드명	협회표준코드	원본액
AB 퓨처 트렌드 증권투자신탁(주식 – 재간접형) 종류A	KR5370A15273	73,090,325
AB 퓨처 트렌드 증권투자신탁(주식 – 재간접형) 종류 C3	KR5370A15315	9,874,148
AB 퓨처 트렌드 증권투자신탁(주식 – 재간접형) 종류 C-e	KR5370A15331	82,452,615

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 (주)
대표이사 이석재